



제418회국회(정기회)
제9차보건복지위원회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최수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430호)

2024. 11.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출연 외 보조·용자를 통한 연구개발비 지원 근거 신설	3
가. 개정안의 내용	3
나. 검토의견	5
다. 관계 기관 의견	8

I. 개요

1. 최수진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430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최수진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4. 7. 31.
- (3) 회 부 일 : 2024. 8. 1.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부로 하여금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연도별·분야별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국·공립 연구기관, 대학, 기업부설연구소 등과 협약을 맺어 연구하게 하고 연구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인구의 고령화, 신·변종 감염병 출현, 의료시스템의 고도화 등에 따라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자금 지원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 예산은 한정적인 상황으로,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지원 방식을 다양화함으로써 연구개발 지원 정책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출연 지원 방식 외에 보조,

융자 지원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보건의료기술을 개발·촉진하기 위한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출연 외 보조·융자를 통한 연구개발비 지원 근거 신설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으로 선정된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현행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이나 기업의 기술개발비’ 외에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보조금이나 융자금’으로도 충당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

현행	개정안
제5조(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② (생략)	제5조(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른 연구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u>출연금</u> 이나 기업의 기술개발비로 충당한다.	③ ----- ----- <u>출연금·보조금·융자금</u> -----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2항에 따른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u>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u> .	④ ----- ----- ----- <u>출연금·보조금을 지급하거나 필요한 자금을 융자할</u> -----.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협약을 맺거나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u>출연금을 지급할 때</u> 특정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 ----- <u>맺는 경우 또는</u> ----- <u>따라 출연금·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자금을 융자하는 경우</u> ----- --.

현행	개정안
⑥ 제2항에 따른 연구과제의 선정 방법 및 협약의 체결 방법과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u>출연금의 지급·사용·관리에</u>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 ----- ----- <u>출연금·보조금의 지급·사용·관리, 용자의 대상·기준·상환 등에</u> ----- -----.
※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나. 검토의견

□ 최근 코로나19 등 전염병으로 촉발된 보건위기상황을 겪으면서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R&D) 사업을 확대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계속 커져왔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연구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정부의 출연금 재원은 한정적이어서 다양한 연구과제의 발굴 및 적시 지원이 제한된다는 문제의식이 확산되어 온 측면이 있음.

-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공립 연구기관이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등과 협약을 맺어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R&D) 사업의 연구과제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는데, 여기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이나 ‘기업의 기술개발비’로 충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¹⁾

□ 개정안은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R&D) 사업에 대한 국가의 지원 방식에 ‘출연’ 외에도 ‘보조’와 ‘융자’를 추가하여 다양화하려는 것으로,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R&D)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한정된 정부 예산을 고려할 때 바람직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1)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5조(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정부는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으로 연도별·분야별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 등과 협약을 맺어 연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호의 기관 중 법인이 아닌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와 협약을 맺을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5.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의료기술 분야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
③ 제2항에 따른 연구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이나 기업의 기술개발비로 충당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2항에 따른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협약을 맺거나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출연금을 지급할 때 특정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제2항에 따른 연구과제의 선정 방법 및 협약의 체결 방법과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사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만, 연구개발(R&D) 사업의 경우에는 연구자와 연구개발기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하는 ‘창의적·도전적인 연구개발’을 촉진²⁾함으로써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측면이 있는바,

연구 현장의 자율성을 어느 정도 보장하기 위하여 상대적으로 예산 집행에 있어서 재량의 범위가 넓은 출연금으로 지원하고 있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³⁾

□ 또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⁴⁾는 출연금을 예산에 계상한 기관에 대하여는 출연금 외에 별도의 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에 따른 경우 연구개발(R&D) 사업비를 출연금으로 지원받는 기관과 보조금으로 지원받는 기관이 나뉘는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와 같이 모두 출연금으로 지원하는 방식보다 효율적인 것인지에 관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한편 용자의 경우에는 일단 지출되면 회수되지 않는 출연·보조와 달리 ‘원리금의 상환’을 전제로 하므로, 연구개발비 사용에 대한 연구과제 수행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여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고, 상환받은 자금을 재융자함으로써 한정된 재원을 활용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는 측면이 있지만,

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5조(정부의 책무)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3. 연구개발기관 간의 협력, 기술·학문·산업 간의 융합 및 창의적·도전적 연구개발 촉진

5. 연구자와 연구개발기관의 자율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제도 마련

6. 연구자와 연구개발기관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마련

3) 보조금의 경우 국가가 사전에 특정한 용도를 지정하여 교부하기 때문에 보조금을 받는 자가 집행과정에서 재량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음.

4)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출연기관에 대한 별도의 보조금 교부 제한) 국가는 출연금을 예산에 계상한 기관에 대하여는 출연금 외에 별도의 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없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사업 수행상 특히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연구개발(R&D) 통계조사의 표준을 제공하기 위하여 마련한 지침서에서는 ‘상환이 면제되는 용자’만을 연구개발(R&D) 예산에 포함하는 점이 고려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⁵⁾

기술개발 성공 등 목표 달성의 불확실성이 큰 연구개발(R&D) 사업에 대한 용자는 사고율⁶⁾이 다른 분야 용자에 비해 높을 수 있는 점, 출연 형태의 지원방식에 익숙한 연구과제 수행기관의 관점에서 출연 외의 지원방식에 대한 수용성을 높일 방안이 논의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점⁷⁾ 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됨.

□ 참고로, 동 개정안 외에도 중소기업 기술혁신사업 및 산업기술·환경기술·해양수산과학기술·국토교통과학기술·기상산업 분야의 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출연 외 지원방식(용자 등)을 도입하는 개정안이 발의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음.

<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출연 외 지원방식 신설 법률안 발의 현황 >

구분	의안번호 (발의일자)	의안명	소관 상임위	대표 발의
1	2200271 (‘24. 6. 10.)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자중기위	최수진 의원
2	2202429 (‘24. 7. 3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자중기위	

5) 우리나라의 경우 상환 면제 여부와 관계없이 ‘용자’는 전액 연구개발(R&D) 예산에 포함되지 않음.

※ 자료: OECD, *OECD Frascati Manual*, 7th Edition, 2015, p.253.

(기획재정부,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2024, 38-42면에서 재인용)

6) 용자액 대비 미상환금액의 비율을 의미함.

7) 진영현, 「정부의 기업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용자형 R&D사업 도입에 관한 제안」, 『KISTEP Issue Paper』 제262호, 2019, 21면.

구분	의안번호 (발의일자)	의안명	소관 상임위	대표 발의
3	2202430 (24. 7. 31.)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위	최수진 의원
4	2202432 (24. 7. 3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노동위	
5	2202433 (24. 7. 31.)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농해수위	
6	2202434 (24. 7. 31.)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위	
7	2202442 (24. 7. 31.)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노동위	

다. 관계 기관 의견

☐ 보건복지부: 수용

-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기술 분야 국가 연구개발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하여 기존 출연금 외 보조금·융자금 지원방식의 신설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510